

(2017 - 02호)

#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KEB 하나은행

건강한 금융생활정보 가이드

## 목차 CONTENTS

1.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
2.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3. 금융꿀팁 200선-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4. KEB 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 음성 인식 텍스트뱅킹』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업그레이드
  - 하이로보(HAI Robo) 서비스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1.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 I 개요

-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

###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 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 ② 가상통화는 가치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③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 ④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 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 II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님

-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음
  -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도 물론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 2 가상 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음
  -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음
-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며,
  -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함
-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4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려움

-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음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음
- 한편,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됨
  -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 5 |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인터넷망에 연결된 가상통화 보관지갑(Hot-Wallet)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암호키만을 보관하여야 함
  - 또한,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저장매체 등(Cold Storage)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함
-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임

## 참고

## 가상통화 관련 용어

-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가상통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임의의 암호화 키쌍(공개키, 개인키)을 담고 있는 지갑을 보유함
  -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에게 본인의 공개키를 알려주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키는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함
  - 가상통화는 네트워크상에서 채굴을 통해 얻거나,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 (공개키, Public Key) 가상통화를 송금할 때 계좌번호에 해당
  - 이용자는 직접 네트워크상에서 생성하거나 거래소를 통하여 공개키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여러 주소를 제한 없이 보유 가능
- ◆ (암호키, Private Key)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비대칭 키 쌍 중에서 공개되지 않고 디지털 서명을 만드는 등 비밀리에 사용하는 개인키
  -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때 등록하고 거래시마다 입력하는 비밀번호와는 서로 다름
- ◆ (가상통화 보관지갑) 사용자가 보유 가상통화를 확인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PC용 지갑 및 모바일 지갑 등이 사용
- ◆ (채굴, Mining) 네트워크상에서 가상통화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
  - 가상통화 채굴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므로, 일반인이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며,
  - 가상통화의 발행방식에 따라 채굴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2.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방통위·금감원, 대포통장 모집광고 급증에 따른 금융사기 예방 문자 발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속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 추이>

(단위 : 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분기
대포통장 발생건수*	73,698	57,295	46,593	11,017

\* 보이сп핑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

'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 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하였다. '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대포통장 모집광고 매체 현황<sup>주1)</sup>>

(단위 : 건)

구 분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페이스북 등 SNS	합계
'16년	579(283%)	143(120%)	79(11%)	801(179%)
'15년	151	65	71	287
'17.1분기	182(469%)	19(△9%)	11(10%)	212(237%)
'16.1분기	32	21	10	63

주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로 접수된 건

주2) ()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 쇼핑몰 등을 사칭하여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양도(대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별첨> 대포통장 모집 광고 주요 사례

①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 매매(대여)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사례

저희쪽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 직접 보내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역 상관없이 주소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사님 보내드리니까 그분 전달 해주시면 되시고요  
3일후에 주소지 말씀하시면 양도받은 카드는 다시 보내드립니다  
\*해당은행 ARS 전화걸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현금인출기 일일출금한도 100만원씩 여섯번 600만원 맞춰주시면 되십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임대해줬다 이야기만 안하면 되세요  
만약 단속에 걸려도 몇 일전 지갑 분실했었는데 통장에 잔고도 없고 바빠서  
카드 분실신고 하는걸 깜빡하고 못했다고 하면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만 벌금 물고 사장님이 벌금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해줬다 말씀하시면 저희도 벌금 더 많이 내고 사장님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임대 해주셨다 이야기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광고) [redacted] '기업에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허락없이 문자를 보내게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사는 주류수입 및 도매를 하고있는 기업이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습니다. 한달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원, 2개의 경우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문의사항은 담당자의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주류거래대금 건으로만 사용하며, 일체 다른용도로의 사용은 없습니다.  
-회사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시켜 드린후 진행하며, 추후 절대 문제되는일은 없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비용, 개인정보, 세금 등 전혀 요구하는 부분 없습니다.  
-임시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진행하므로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 계좌임대/월500만

[Web발신]

(광고)

- ◎안녕하세요.
- ◎주류회 [redacted] 금팀입니다.
- ◎우선 사전 동의없이 문자 보내드린점 죄송합니다.
- ◎저희 회사가 수입주류업체다 보니 세금 부분이80%이상 발생합니다.
- ◎그래서 회사법인계좌 사용을 줄이구 개인계좌를 대여받아
- ◎세금을 줄이고자 합니다.
- ◎저희 회사쪽으로 사용않하시는 계좌를 대여해주실 경우
- ◎2개 월500만 1개 월200만
- ◎인당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 ◎주로 주류거래수금건으로만 진행합니다.
- ◎저희 회사에 대한 서류 모두 확인 시켜드리고 진행하는 부분이라 차후 문제 되는일 절대 없습니다.

### [Web발신]

(광고)

쇼핑몰입니다.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문자 드렸습니다. 1개300정도 2개 600만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상담전화

02 [redacted]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0:00~

오후 6: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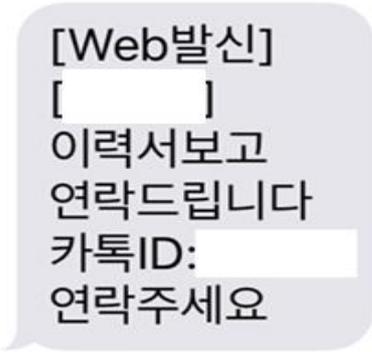
②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사례

○구직사이트에 일반적인 구인광고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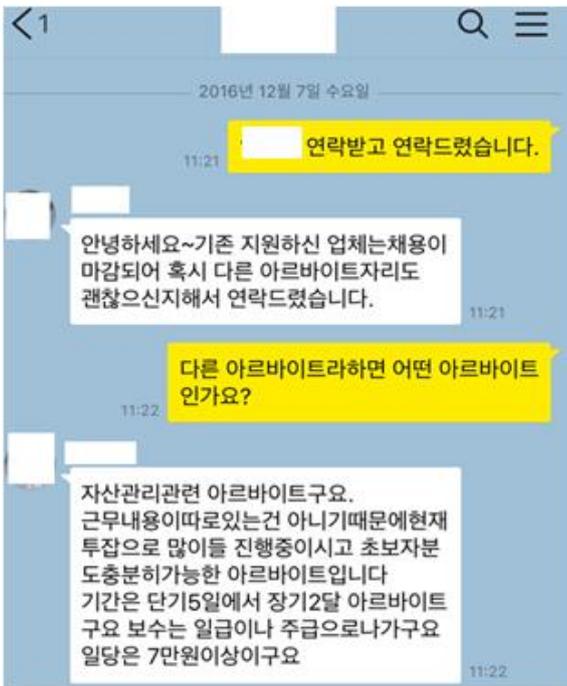


○사기범은 이력서를 제출한 지원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문자 메시지  
(오늘) 11:17



○사기범은 기존 아르바이트는 마감되었다며 통장대여 아르바이트를 권유



### 3. 금융꿀팁 200선-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제목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p>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1) 전업주부 A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서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작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하였음.</li> <li>▪ (사례2) 직장인 B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음.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씨는 보험가입 후 2달이 지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음.</li> <li>▪ (사례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음.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혹시나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아래 5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b>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b></p>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cc;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철회권리 :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철회 가능</li> <li>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에는 보장 가능</li> <li>③ 품질보증해지권리 :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 가능</li> <li>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 부당권유로 해지시 6개월 내 부활 가능</li> <li>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 최초 보험료 낸 경우에는 보장 가능</li> </ul> </div>

## ① 청약철회권리

### 청약철회권리(Cooling-off)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여도, 청약 철회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 \*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

-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 1,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단기보험)
- ▶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 ▶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 단,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 ▶ 단체보험계약

## ②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다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③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안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통상 “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라 부름)할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 ▶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해지권리(제도)”를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④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 ★ 기존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함

따라서, 승환계약\*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고, 신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

또한, 아래와 같은 승환계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부당한 권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자는 보다 손쉽게 기존계약을 부활하여 승환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권유로 인한 승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 ▶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경우
- ▶ 보험설계사 등이 ①기존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신계약을 가입하거나** ②신계약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⑤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①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②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4. KEB 하나은행의 기타 금융서비스

### 1) KEB하나은행, 『음성 인식 텍스트뱅킹』 서비스

KEB하나은행은 음성을 인식하여 음성 명령으로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텍스트뱅킹」을 출시했습니다.

텍스트뱅킹(Text Banking)은 KEB하나은행이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개념 대화형 금융플랫폼으로 이번에는 여기에 삼성전자의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인 ‘빅스비(Bixby)’를 적용, 음성 명령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빅스비’ 기반의 KEB하나은행 「음성 인식 텍스트뱅킹」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이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텍스트뱅킹을 통해 입금계좌를 ‘별칭’으로 미리 등록만 해 놓으면 15초도 채 걸리지 않아 이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뱅킹에 자녀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미리 등록해 놓고 갤럭시 S8에서 빅스비를 활성화한 후 “KEB하나은행에서 아들한테 10만원 보내줘”라고 말하면 KEB하나은행의 텍스트뱅킹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생체인증을 거쳐 이체 내용 확인만 하면 모든 이체 거래가 완료됩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음성 인식 텍스트뱅킹」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보안매체 입력 프로세스를 대폭 정리하여 간편하게 적용했습니다. 특히, 등록된 입금계좌에 이체 시에는 지문 혹은 홍채를 통한 생체인증 한 번만으로 끝나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 시에는 계좌비밀번호만 추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체 거래뿐 만 아니라 음성 명령을 통해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하고, 로그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환율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체 거래는 1일 3백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삼성 갤럭시 S8, S8+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손님들은 해당 기종의 삼성페이 앱을 통해 KEB하나은행의 음성 인식 텍스트뱅킹을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으며, 빅스비가 서비스되지 않는 삼성

갤럭시 S7, S7엣지 기종에서는 음성이 아닌 터치 기반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KEB하나은행,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업그레이드

KEB하나은행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은행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하나멤버스' 앱 및 은행 스마트폰 앱 '1Q bank'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단 5분 이내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동의절차 간소화 및 개인사업자로의 이용대상 확대, 가입 가능 예·적금 상품 확대 등의 기능도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banking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OTP' 서비스 제공으로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바일OTP'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OTP로 스마트폰의 기종에 관계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실물OTP와 동일한 우수한 보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써 KEB하나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손님은 영업점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은행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없는 높은 편의성과 쉽고 빠른 계좌개설 기능은 손님들이 직접 참여한 테스트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비대면 계좌개설 기능이 추가된 하나멤버스는 천만 가입자를 확보한 금융권 최초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의 위치 검색기능에 기반한 증강현실서비스 '하나머니GO'와 대화하면서 송금과 더치페이가 가능한 '하나톡', 하나금융그룹 4개 관계사 앞 신용대출 조회가 한번에 가능한 '하나멤버스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생활금융플랫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3) KEB하나은행, 하이로보(HAI Robo)서비스

KEB 하나은행은 손님의 행복한 금융 생활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 브랜드 'HAI(하이)'를 출범하고 첫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 'HAI Robo(하이 로보)'를 출시했습니다.

'HAI Robo(하이 로보)'는 작년 3월 국내 은행 최초로 출시한 로보어드바이저 'Cyber PB'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정교한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체계성과 온라인의 편의성을 결합하였습니다.

HAI Robo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에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과거 수익률, 변동성 외에도 자산 분산도, 비용 효율성,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손님은 스마트폰(1Q Bank)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HAI Robo를 통해 그 동안 자산 규모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손님도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